

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

『식품위생법』 제10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1. 제 목 :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통지
2. 처분근거 : 식품위생법 제41조(식품위생교육)제1항 및 제101조(과태료)
3. 공고기간 : 2016. 07. 15. ~ 2016. 07. 31.(17일간)
4. 당사자 등

업종	업소명	영업주	소재지	사 유
식품제조가공업	영농조합법인 청양효산	최종민	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567-31	2015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미 수료

5. 고지사항

- 위 당사자는 2016.08.01.일까지 충청남도 청양군 민원봉사실 위생팀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청양군 민원봉사실 위생팀 ☎(041)940-2183

2016년 07월 14일

청 양 군 수

